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13

발의연월일: 2020. 8. 18.

발 의 자:민홍철・김진표・김병주

안규백 · 한정애 · 김병기

인재근・설 훈・홍영표

송영길 · 진선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면서 전상·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 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군 복무 중 전상·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라도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역을 하여야 하고,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사들이완치 후 전역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전역 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

간 단위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,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전역 보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당시 전상·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을 보 류하고 있는 혐역병에게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현역의 복무) ① ~ ④	제18조(현역의 복무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	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
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	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
후 6개월 이내로 하며, 의사가	후 6개월 이내로 하되, 6개월이
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	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
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	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
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.	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
	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
	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의사가
	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
	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
	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⑥ ~ ⑧ (생 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